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391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이재정・민병덕・박지원

민홍철 • 강준현 • 박홍배

임호선 · 김영호 · 강경숙

백혜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·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기한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직업소개사업,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35조).

법률 제 호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 중 "7일"을 "3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·제19조·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직업소개업, 직업정보 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해당 사업을 각각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	제35조(허가・등록 또는 신고 사
업의 폐업신고) 제18조ㆍ제19	업의 폐업신고)
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	
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	
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	
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	
업한 날부터 <u>7일</u> 이내에 고용	<u>30일</u>
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	
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	
신고하여야 한다.	